

의안번호	2210837
의 퇴 인	정태호 의원
회 답 일	2025. 7. 16.
추계번호	25A323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천 160만원, 2031년 2천 16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800만원(연평균 2천 16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8조)	21.6	21.6	21.6	21.6	21.6	108.0	21.6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 (인권·환경실사의 지원 등)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여야 함	의무규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을 위한 컨설팅, 교육, 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8조 (인권·환경기업위원회의 설치)	○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기획 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3	안 제24(사무국)	○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 무국을 둠	의무규정
4	안 제35조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 금 설치)	○ 위원회는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함	의무규정
	안 제36조(기금의 조성)	○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 - 정부 출연금,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정부 외의 자 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다른 기금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외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안 제37조(기금의 용도)	○ 기금은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함 - 부정적 영향의 예방·구제 사업 - 기업의 인권·환경 침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 원 사업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 -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의 피해자 권익증진, 피해예방 및 구제	
5	안 제41조(벌칙) 안 제42조(양벌규정)	○ 시정명령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자는 5년 이 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 행위자가 속한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형을 과함	의무규정
	안 제43조(과태료)	○ 기업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지 않은 자는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 하지 않은 자 등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인권·환경기업위원회의 설치)	○	—
2	안 제24(사무국)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7조(인권·환경실사의 지원 등)	×	
4	안 제35조(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설치) 안 제36조(기금의 조성) 안 제37조(기금의 용도)	×	
5	안 제41조(벌칙) 및 안 제42조(양벌규정)	×	○ 미대상(재정수입의 증가)
6	안 제43조(과태료)	×	○ 미대상(재정수입의 증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 추계함
 - 본 추계는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인권·환경기업위원회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회의비 등의 비용으로 가정
 - 회의장소 임차료나 지원인력 등 별도 부대경비는 가정에 반영하지 않음
 - 인권·환경기업위원회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¹⁾ 및 ‘규제개혁위원회’²⁾ 구성을 참고하고, 위원회 개최 횟수 및 민간위원에 대한

1)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 및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갈등관리심의위원을 두며 이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정부의 규제정책 심의·조정,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

수당은 유사 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

－ 개최 횟수는 매월 1회, 연간 총 12회, 민간위원 지급수당은 인당 30만원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인권환경기업위원회 설치(안 제17조)

- (구성) 제정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고, 본 추계에서의 민간위원은 노동자·사용자·시민단체가 추천한 6인이 될 것으로 가정함
 - － 제정안은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기획재정부장관-1인, 상임위원 1인, 노동자단체 추천 2명, 사용자단체 추천 2명, 시민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
- (횟수) 유사 위원회 개최실적을 참고하여 연 12회 개최될 것으로 가정
 - －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본위원회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개최 횟수는 28회(월 2.3회)이며, 분과위원회의 경우 최근 2년간 경제분과위원회는 연평균 개최 32회(월 2.6회)·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28회(월 2.3회) 개최되었음

[표 2] 최근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의 개최 현황

(단위: 회)

구 분	2022	2023	2024	연평균
본위원회	40	25	20	28
경제분과위원회	—	28	36	32
행정사회분과위원회	—	26	30	28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답변자료

-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45개 부처 및 위원회의 최근 3년간 연평균 개최 횟수는 1 ~ 4.3회 개최하였음

[표 3] 최근 3년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회)

연번	부처명 ※ 직제순	설치여부 (설치연도)	개최 현황			
			2022	2023	2024	연평균
1	기획재정부	○ (‘17년)	4	4	4	4
2	교육부	○ (‘16년)	3	3	3	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3년)	2	2	2	2
4	외교부	○ (‘20년)	2	1	2	1.7
5	통일부	○ (‘17년)	3	2	3	2.7
6	법무부	○ (‘14년)	3	3	2	2.7
7	국방부	○ (‘10년)	3	3	4	3.3
8	행정안전부	○ (‘07년)	2	2	2	2
9	국가보훈부	○ (‘07년)	4	4	5	4.3
10	문화체육관광부	○ (‘08년)	2	2	2	2
11	농림축산식품부	○ (‘17년)	3	3	2	2.7
12	산업통상자원부	○ (‘13년)	2	2	2	2
13	보건복지부	○ (‘09년)	2	2	2	2
14	환경부	○ (‘07년)	2	4	3	3
15	고용노동부	○ (‘07년)	2	2	3	2
16	여성가족부	○ (‘17년)	1	2	2	1.7
17	국토교통부	○ (‘05년)	1	1	1	1
18	해양수산부	○ (‘13년)	2	3	3	2.7
19	중소벤처기업부	○ (‘11년)	2	2	2	2.0
20	인사혁신처	○ (‘17년)	2	3	2	2.3
21	법제처	X	—	—	—	—
22	식품의약품안전처	○ (‘15년)	3	3	1	2.3
23	국세청	○ (‘17년)	1	2	2	1.7
24	관세청	○ (‘05년)	1	1	2	1.3

25	조달청	0 (‘08년)	2	2	3	2.3
26	통계청	0 (‘19년)	2	2	2	2
27	재외동포청	0 (‘24년)	—	—	2	2
28	병무청	0 (‘07년)	2	1	2	1.7
29	방위사업청	0 (‘18년)	1	1	1	1
30	경찰청	0 (‘13년)	2	2	1	1.7
31	소방청	0 (‘18년)	2	1	0	1
32	국가유산청	0 (‘20년)	2	3	1	2
33	농촌진흥청	0 (‘17년)	1	1	1	1
34	산림청	0 (‘07년)	2	1	2	1.7
35	특허청	0 (‘17년)	2	2	2	2
36	질병관리청	0 (‘21년)	2	3	2	2.3
37	기상청	0 (‘17년)	1	1	2	1.3
3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17년)	3	3	3	3.0
39	새만금개발청	0 (‘17년)	1	1	2	1.3
40	해양경찰청	0 (‘19년)	2	2	2	2
41	방송통신위원회	0 (‘08년)	4	4	4	4
42	공정거래위원회	0 (‘17년)	1	1	1	1
43	국민권익위원회	0 (‘17년)	4	3	3	3.3
44	금융위원회	0 (‘10년)	2	3	2	2.3
45	개인정보위원회	0 (‘21년)	2	2	3	2.3
46	원자력안전위원회	0 (‘20년)	1	1	1	1

자료: 국무조정실 답변자료

- (단가)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³⁾ 및 유사 위원회 지급액을 감안하여 회당 30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 참석비 20만원/회이며, 안전검토 수당 10만원/회(위원 기준)으로 나타남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회의 참석비 15만원(대면기준), 자문료 10~15만원으로 나타남

□ 제정안에 따라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천 160만원, 2031년 2천 16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800백만원(연평균 21.6백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4] 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위원회의 설치(안 제17조)	21.6	21.6	21.6	21.6	21.6	108.0	21.6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3)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406.,

1.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지급하되,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로 지급 가능함
 2. 위원이 단순히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